결혼과 가정에서 녀성인권보장과 공화국사회주의법

김명옥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인권은 자주적으로, 창조적으로 살며 발전하려는 사회적인간의 신성한 권리입니다.》 (《김정일선집》 중보판 제17권 228폐지)

녀성인권문제는 녀성들의 자주적권리를 보호하고 보장하는 문제이다. 인구의 절반을 차지하는 녀성들에게 참다운 인권을 보장하는것은 사회의 진보와 발전에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녀성인권보장에서 중요한것은 결혼과 가정에서 녀성인권 다시말하여 결혼과 가정에서 녀성들의 평등한 권리를 실현하는것이다.

남녀간의 평등한 관계는 결혼과 가정관계에서 집중적으로 표현된다.

결혼과 가정에서 녀성들의 평등한 권리를 보장하여야 녀성인권문제를 해결할수 있으며 녀성들에게 존엄높고 보람찬 생활을 보장할수 있다.

결혼과 가정에서 녀성인권을 보장한다는것은 녀성들에게 결혼과 가정의 주인, 자기 운명의 주인으로서의 남자들과 평등한 권리를 부여하고 그의 실질적인 행사를 보장한다 는것을 의미한다.

녀성들에게 결혼과 가정에서 평등한 권리를 부여하고 그의 실질적인 행사를 법적으로 보장하는것은 녀성인권보장의 필수적인 요구이다.

결혼에서 녀성들의 권리를 보장하는것이 중요한 문제로 제기되는것은 결혼 그자체가 다름아닌 남녀사이에 이루어지는 결합이라는 사정과 관련된다.

결혼의 당사자는 남성과 녀성이며 남성과 녀성간의 평등한 권리는 결혼에서 남녀간의 평등을 실현하는 문제와 떨어져서 생각할수 없다.

결혼은 중요한 인륜대사의 하나이며 결혼의 권리는 인권의 중요한 내용을 이룬다.

결혼에서 녀성들의 권리는 녀성들의 인격이 어떻게 론의되고 보장되는가에 따라 다 시말하여 사회제도에 따라 서로 다르게 보장되고 보호되며 행사된다.

력사적으로 보면 계급의 발생과 더불어 남녀불평등이 처음으로 생겨난 노예사회에서 남녀간의 불평등은 처음 결혼과 가정생활에서부터 가장 집중적으로 혹심하게 나타났다. 남자는 녀자를 선택할 권리가 있었지만 녀자는 남자를 제마음대로 선택할수 없었으며 오 직 남자의 요구에 따라서만 혼인을 할수 있었다. 녀성들은 결혼에서 아무런 자유와 권리 도 행사하지 못하였다.

결혼에서 남녀간의 불평등이 존재하는 한 녀성들의 권리보장, 인권문제에 대하여 론의할수 없다. 결혼에서 남녀간의 진정한 권리, 평등한 권리를 실현하는것은 녀성인권보장의 선결조건이며 녀성문제해결의 중요한 과업으로 된다.

가정생활에서 녀성들의 권리를 보장하는것이 중요한 문제로 되는것은 가정생활이 전 반적사회생활을 축소된 형태에서 누리는 기충단위생활이라는 사정과 관련된다. 가정은 가장 가까운 혈육들이 모여 생활을 함께 하는 기층단위이다.

가정은 바로 혈연적으로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모여 다종다양한 인간생활을 함께 진행해나가는 사회생활의 축소판, 기층생활단위이다.

가정생활과 사회생활은 통일적인 과정속에서 진행되며 유기적으로 결합되여있는것으로 하여 사람의 자주적인 요구는 가정생활에서도 철저히 실현되여야 한다.

녀성들이 사회생활에서뿐아니라 가정에서도 주인으로서 남자들과 평등한 권리를 행사 하여야 사회적존재로서, 자기 운명의 주인으로서 자주적으로 창조적으로 살아나갈수 있다.

결혼과 가정에서 녀성인권을 보장하자면 녀성들이 평등한 지위와 권한을 행사할수 있도록 결혼과 가족관계에 대한 법적규제문제가 해결되여야 한다.

법은 사람들의 모든 행동을 규제하는 행위규범이다.

사회생활과 함께 사람들의 가정생활도 법에 의하여 규제되며 사람들은 법적규제속에 서 결혼도 하고 가정생활을 하게 된다.

사회주의국가는 결혼과 가정에 대한 법적규제를 통하여 사회를 이루는 기층조직인 가정의 안정을 보장하고 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적극 이바지하도록 한다.

결혼과 가정생활에 대한 법적규제에서 녀성들의 평등한 권리를 보장하여야 녀성들이 결혼과 가정의 주인, 자기 운명의 주인으로서의 지위를 차지하고 운명개척을 해나갈수 있 는 법적담보를 마련할수 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법은 결혼과 가정생활에서 녀성들의 평등한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녀성인권보장의 위력한 법적담보를 마련하고있다.

결혼과 가정에서의 녀성인권보장에서 중요한것은 첫째로, 녀성들에게 남성들과 평등 한 결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것이다.

녀성들에게 결혼의 자유를 보장한다는것은 녀성들이 본인의 의사와 요구에 따라 결혼을 자유롭게 선택하며 독자적으로 결정할수 있는 권리를 가지도록 한다는것을 의미한다.

착취사회에서 녀성들은 봉건적인 강제 혹은 물질적인 고려, 경제적인 리해관계에 의하여 남자의 얼굴을 한번 보지도 못하고 말한마디도 해보지 못하고 결혼을 강요당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해방후에 작성하신 《북조선남녀평등권에 대한 법령》에서 녀성들은 남자들과 꼭같이 자유결혼의 권리를 가진다는것을 힘있게 선언하심으로써 우리 녀성들을 세기를 두고 얽매여오던 강제적이며 불평등한 결혼의 사슬에서 해방시켜 주시였다.

오늘 우리 나라에서 녀성들의 결혼의 권리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가족법》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녀성권리보장법》에 의하여 확고히 담보되고있다.

공화국가족법 제8조에는 《공민은 자유결혼의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제되여있다. 이 것은 결혼나이에 이른 공화국공민들은 누구나 다 자기의 의사와 요구에 따라 자신이 결혼을 자유롭게 선택하며 독자적으로 결정할수 있는 결혼의 권리를 가진다는것을 선언한 동시에 이 결혼의 자유는 성별이나 그 어떤 조건에도 제한되지 않는 평등한 권리임을 힘있게 선언한것이다.

공화국녀성권리보장법 제45조에서는 녀성은 자유결혼의 권리를 가진다는것과 녀성의 결혼자유권을 침해하거나 간섭하는 행위를 할수 없다는데 대하여 규제하고있다.

결혼은 그 누구의 강요에 의하여 진행되는 의무적인것이 아니라 본인자신들의 의사

와 요구에 의하여 진행되는 자유로운것으로 되여야 한다.

너성들을 비롯하여 결혼하려는 모든 남녀당사자들이 그 어떤 사회적인 또는 가정적 인 강제와 구속도 받음이 없이 자유로운 의사합의에 의하여 결혼하는것은 사회주의제도 자체의 필연적요구이다.

우리 나라에서는 결혼이 다른 사람들의 부당한 간섭에 의하여 당사자들의 자원적의 사와는 무관계하게 흥정되거나 물질적타산에 의하여 롱락되는것이 허용되지 않는다.

자유로운 결혼에 대한 이러한 법적보호는 성별에 구애됨이 없이 모든 남녀들에게 평 등하게 해당되며 담보되는것으로서 우리 녀성들에게 결혼의 자유를 보장하고있다.

결혼과 가정에서의 녀성인권보장에서 중요한것은 둘째로, 녀성들에게 가정에서의 평 등한 재산상의 권리를 보장하는것이다.

가정에서 녀성들의 남자들과 평등한 권리는 재산의 면에서도 확고히 보장되여야 한다.

경제생활은 문화도덕생활과 함께 가정생활의 중요한 한 측면이다. 사회를 이루는 개개의 성원들의 물질소비생활은 가정을 거점으로 가정생활단위로 이루어지며 사람들은 가정을 통하여 먹고 입고 쓰고사는 물질소비생활을 진행한다. 재산은 가정생활의 물질적기초이며 가정성원들의 정신문화생활을 위한 물질적담보이다.

재산관계는 가정생활의 필수적인 분야이며 재산관계의 공고성은 가정의 공고성을 담보한다. 재산상의 권리에서 남녀가 평등해야 부부의 평등을 실현하고 가정의 공고한 화목과 유족하고 문명한 생활,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원만히 보장할수 있다.

재산에 대한 소유권에서 녀성들의 평등한 권리를 보장하는것이 중요하다.

재산에 대한 권리에서 기본은 재산에 대한 소유권이다. 재산에 대한 소유권은 일정한 재산을 점유, 리용, 처분할수 있는 권리이다.

남편이라고 하여 재산관계에서 특권을 부여하고 안해는 남편의 특권행사에 따른다면 남녀평등이 실현될수 없다.

공화국가족법과 녀성권리보장법은 재산소유권에서 남편의 특권을 철저히 배제하고 녀성들의 평등한 권리를 보장하고있다.

공화국법에서는 가정재산에 대하여 남편과 안해가 동등한 권리를 행사하도록 규제하고있다.

공화국녀성권리보장법 제42조에서는 결혼한 녀성은 가정재산의 소유권을 남편과 동등하게 가지며 녀성은 수입에 관계없이 남편과 평등하게 가정재산을 점유, 리용, 처분할 수 있다는것을 규제하고있다.

수입에 관계없이 가정재산을 남편과 평등하게 소유할수 있도록 한 이 규제는 녀성들이 가정살림을 옳바로 운영하며 가정의 공동의 부를 더욱 증대시켜나가도록 할뿐아니라 부부관계를 평등한 동지적관계로 튼튼히 하는데서 의의를 가진다.

우리 사회에서 부부는 재산과 돈을 벌기 위해 로력을 합치는것이 아니며 부부는 동지적으로 서로 사랑하고 협력하며 도와주는 고상한 인간적관계에 있다. 설사 남편이 로동에 참가하고 안해가 가사를 돌보는데 참가한다고 하여도 남편이 이룩한 재산에는 배우자로서의 안해의 협력과 기여가 깃들어있는것이며 따라서 그 재산에 대하여 공동의 권리자로서의 자격을 안해가 당당히 가지는것은 응당한것이다.

부부가 결혼생활과정에 마련한 가정재산은 그전체가 남자의 재산인 동시에 녀자의

재산으로 인정되며 안해는 남편과 동등하게 가정재산을 점유, 리용, 처분할수 있다. 안해는 가정유지와 가정의 공동의 복리를 위하여 가정재산의 점유와 리용은 물론 그것을 무엇을 위하여 얼마만큼 어디에 쓸것인가 등의 문제를 남편과 호상 토의하여 결정할수 있다. 안해는 가족법상 제3자와의 재산적관계에서 남편을 대리할수 있는 법적권리를 가진다.

녀성들은 개인재산에 대하여서도 평등한 소유권을 가진다.

공화국가족법(제39조)과 녀성권리보장법(제42조)은 개인재산에 대하여서도 녀성들이 평등한 권리를 가지도록 담보하고있다.

공화국가족법에 의하여 안해는 남편과 동등하게 결혼전 재산과 증여받은 재산, 개인 적용도에 쓰이는 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가진다. 다시말하여 녀성은 남편과 동등하게 결혼 전에 가지고있던 자기의 고유한 재산과 국가에서 받은 선물(가정단위로 받은 선물제외), 개별적사람으로부터 받은 기념품,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이라고 할지라도 본인의 개 인적용도에만 쓰이는 개인용품 등과 같은 자기의 개별재산의 소유권을 가지고있다.

재산에 대한 상속권에서 녀성들의 평등한 권리를 보장하는것이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공민이 사망하였을 때 그의 재산과 재산상의 권리의무가 다른 사람에게로 넘어가고 이어받는 관계를 상속이라고 한다. 상속은 어느 사회에서나 다 있으며 사회제도에 따라 상속순위나 범위, 목적이 달리 정해지게 된다.

근로자들의 생활을 안정시키며 물질생활을 공고히 하는데서 상속문제는 중요한 의의 를 가진다.

공화국가족법과 녀성권리보장법은 녀성들에게 평등한 상속권을 규제하고있으며 성별에 따르는 상속에서의 그 어떤 차별도 철저히 배제하고있다.

법률적으로 볼 때 우리 나라에서 상속의 제1순위는 배우자, 자녀, 부모이며 제2순위는 조부모와 손자녀, 형제자매, 제3순위는 근친이다.

사망자의 배우자는 남편이든 안해이든 관계없이 사망자의 자녀, 부모와 함께 제1순위의 법적상속인으로 된다. 같은 순위의 상속인들이 여러명일 때 그들에게 차례지는 몫도남녀의 구별이 없이 똑같도록 규제되여있다. 실례로 사망자의 재산이 자식들에게 상속되는 경우 아들이든 딸이든 상속몫은 동일하다. 이렇게 함으로써 상속을 통하여서도 차별없는 녀성들의 평등한 권리를 보장하고있다.

결혼과 가정에서의 녀성인권보장에서 중요한것은 셋째로, 녀성들에게 출산에서 평등 한 자유와 법적보호를 보장하는것이다.

출산의 자유는 녀성들이 아이를 낳거나 낳지 않을수 있는 자유이다. 녀성들은 아이를 직접 낳아키우는 직접적당사자인것만큼 녀성들에게 아이를 낳거나 낳지 않을수 있는 자 유를 보장하는것은 응당한것이다.

우리 나라에서 녀성들은 공화국녀성권리보장법에 의하여 출산의 자유를 보장받고있다. 녀성권리보장법 제50조에서는 녀성은 자녀를 낳거나 낳지 않을 권리가 있다고 규제하고있다.

녀성은 자기의 자유로운 의사와 요구에 따라 아이를 낳거나 낳지 않을수 있으며 누구도 녀성에게 아이를 낳거나 낳지 않을것을 강요하거나 이에 부당하게 간섭할수 없다.

녀성들에게 부여되는 출산의 자유는 반드시 녀성들이 출산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향유할수 있는 국가적 및 사회적인 조건과 환경을 마련하는것과 결부되여야 한다. 아무리

녀성들이 아이를 낳고싶어도 낳을수 없고 또 키울수 있는 사회적인 조건과 환경이 마련 되여있지 못하면 녀성들에게 부여된 출산의 자유는 실현될수 없다.

우선 녀성들에게 해산과 관련한 국가적인 보호와 혜택을 법적으로 보장하는것이 중 요하다.

녀성들에게 해산과 관련한 보호와 혜택을 돌리는것은 녀성들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 하고 어린이들의 건전한 양육을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요구이다.

공화국어린이보육교양법 제20조에서는 국가는 녀성들에게 산원을 비롯한 의료기관을 통하여 임신한 녀성들을 제때에 등록하고 그들에게 체계적인 의료봉사와 해산방조를 무료로 주며 산후의 건강을 보호한다는것을 규제하고있다. 녀성권리보장법 제51조에서도 녀성들이 해산을 하는 경우 해당 의료기관은 안전하고 효과적인 약품과 치료기술을 제공하여 녀성의 건강을 책임적으로 보장할데 대하여서와 보건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임신기의 녀성건강보호에 깊은 관심을 돌리며 산모와 어린이의 건강을 잘 돌봐줄데 대한 의무를 규제하고있다. 특히 삼태자, 다태자를 낳아키우는 녀성과 어린이에게는 담당의사를 두며 훌륭한 살림집과 약품, 식료품, 가정용품을 무상으로 공급하는것 같은 특별한 배려와 혜택을 돌린다는것을 규제하고있다.

세계일류급의 평양산원을 비롯하여 각 도들마다 현대적인 산원들이 꾸려져 해산시 너성들에 대한 최상최대의 의료상방조를 가장 안전하게 담보하고있다. 나라의 모든 녀 성들이 평양과 각도 산원들에서 의료상방조를 무상으로 받으며 귀여운 아기들을 낳아 키우는것은 우리 나라 녀성들만이 누리는 복중의 복이며 크나큰 행운이다. 황금만능의 자본주의제도에서는 꿈에도 상상할수 없는 이 현실은 녀성들을 위한 고마운 시책이 끊 임없이 실시되고 모든것이 인민대중을 위하여 복무하는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에서만 펼쳐질수 있다.

또한 녀성들에게 아이들을 낳는것과 함께 어린이들을 훌륭히 키울수 있는 국가적 및 사회적인 혜택과 보장을 법적으로 담보하는것이 중요하다.

자라나는 어린이들을 조국의 미래, 사회주의강국건설의 후비대로, 나라의 왕으로 내세우는 우리 나라에서는 어린이들을 국가와 사회에서 맡아키우는것을 국가의 중요시책으로 하고있다.

공화국어린이보육교양법에서는 모든 어린이들을 탁아소와 유치원에서 국가와 사회의 부담으로 키울데 대한 원칙을 규제한데 기초하여 국가와 사회적부담에 의한 어린이양육 과 보육교양에 대하여 전면적으로 규제함으로써 세상에서 가장 우월한 어린이보육교양제 도를 확립하고있다.

인민적인 어린이보육교양제도에 의하여 우리 나라에서는 학령전어린이들을 탁아소와 유치원에서 국가적 및 사회적인 혜택으로 키운다. 매개 어린이들에게 돌려지는 혜택은 부 모의 직업과 로동의 량과 질에 관계없이 완전히 평등하게 적용되며 탁아소와 유치원에서 는 집단보육규범과 위생방역규범의 요구에 맞게 어린이들의 생활환경을 깨끗이 꾸리며 영양기준에 따르는 여러가지 영양급식과 체계적인 의료봉사를 하는 등 어린이보육사업을 과학화하고 끊임없이 발전시켜나간다.

자식을 낳는것이 커다란 부담으로 되고있는 자본주의사회에서 녀성들은 생활고에 쪼 들리며 아이를 낳고싶어도 낳을수 없고 아이를 제대로 키울수가 없다. 자본주의사회에서 는 당장 해산을 앞둔 임신부가 청진기로 환자가 아니라 그의 돈주머니부터 가늠해보는 의사 아닌 의사들에 의해 한지에서 아이를 낳는 비극이 수시로 빚어지고있다. 입원비나해산비만도 아니다. 황금만능의 자본주의사회에서는 자식을 키우자면 학비를 비롯하여 막대한 돈이 있어야 한다. 그런즉 자본주의나라의 수많은 녀성들에게 있어서 자식을 낳아키우는것은 불안과 공포로 되고있으며 아이를 키울수 없어 낳은 아이마저도 제손으로 죽이지 않으면 안되는 비참한 현실이 벌어지고있다.

결혼과 가정에서의 녀성인권보장에서 중요한것은 넷째로, 녀성들에게 자녀양육에서 평등한 권리와 법적보호를 보장하는것이다.

너성들에게 자녀의 양육교양에서 남편과 동등한 권리, 의무를 부여하는것은 자녀의 양육교양에 유리한 가정적 및 사회적환경을 보장하기 위한 요구인 동시에 너성들에게 남편과 함께 가정의 주인으로서의 지위를 차지하고 주인으로서의 역할을 원만히 다하도록하기 위한 중요한 요구이다.

조국의 앞날을 떠메고나갈 후대들을 키우는 어머니로서의 녀성들의 역할은 누구도 대신할수 없으며 자녀의 양육교양에서 녀성들에게 평등한 권리를 보장하여야 가정과 사 회발전에서 녀성들의 책임과 역할을 다해나갈수 있다.

공화국가족법과 녀성권리보장법은 녀성은 남편과 평등하게 미성년자녀를 보호할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는것을 규제하고있다.

남편이 사망하였거나 행위능력을 상실하였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미성년자의 후견인으로 될수 없을 경우에 너성은 자녀를 보호할 권리와 의무를 지닌다.

자녀에 대한 양육교양에서 녀성에게 평등한 권리의무가 부여된것으로 하여 자녀들을 정신육체적으로나 도덕적으로 건전한 풍모를 갖추도록 하는데서 유리한 조건을 마련하고 있으며 자녀들을 나라의 억센 기둥으로 키우는데서 녀성들이 지니고있는 중대한 책임과 역할을 다할수 있는 법적담보가 마련되였다.

오늘 우리 나라에서 자녀들을 많이 낳아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튼튼히 키워 조국보위와 사회주의건설장에 내세우고있는 수많은 모성영웅들이 배출되고있는 현실은 녀성들에게 출산의 자유가 충분히 보장되고 녀성들과 어린이들, 가정들에 많은 국가적 및 사회적혜택이 돌려지는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웅변으로 증명해주고있다.

참으로 녀성존중의 해빛밝은 대화원에서 우리 조선녀성들의 자주적권리, 인권은 가장 빛나게 실현되고있다.

우리 녀성들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령도따라 세상에서 가장 우월한 인민대중중심의 우리 식 사회주의제도를 굳건히 옹호고수하고 더욱 빛내이며 이 땅우에 무궁번영하는 사회주의강국을 건설하기 위하여 힘차게 투쟁해나갈것이다.

실마리어 결혼, 가정, 녀성인권보장